

김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안 번호	제3768호
----------	--------

제출년월일 2026. 7. 8.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의 위임 사항에 따라, 시에서 주관 및 실시하는 각종 시험 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험수당의 지급 대상 및 기준 규정 (안 제2조)
- 나. 시험 종사자에 대한 여비 지급 기준 마련 (안 제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2026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수당 내 조치(비용추계서 별첨)
- 다.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6. 4. 15. ~ 5. 6. (20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부서협의
 -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 가) 중앙부처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나) 경기도 : 인사과

김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① 김포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통보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서류전형,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의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를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총무과
입 안 자	담당관·과장·소장 직위·성명	총무과장 이 경 희
	팀장 직위·성명	인재성장팀장 문 선 애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신 경 원(☎2324)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시험위원 등) ⑤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시험관리관·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장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김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2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험 종사자에 대한 시험수당 지급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시 그 사유 기재(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 '26년 총 예산 : 44,300천원 (면접시험 위원수당 38,700천원 + 서류전형 위원수당 5,600천원)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행정안전국 총무과 과장 이경희 팀장 문선애

**2026년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

2026. 1.



**인사혁신처
공개채용과**

2026년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

구 분				단 위	지급기준(원)	비고
문 제 출 제	객관식(5지형)			문제당	50,000	
	객관식(4지형)			"	45,000	
	주관식			소문제당	40,000	
	출제 근거자료 첨부			"	5,000	
	학제 통합논술시험	분야별		문제당	100,000	
		합숙		1일	300,000	
	기본교재비	일반		문제당	5,000	
		PSAT		"	10,000	
	면접문제	대문제	심화(A4 8매 초과)	"	200,000	
			기본(A4 5~8매)	"	150,000	
		중문제(A4 2~5매)		"	80,000	
		소문제(A4 1매 이하)		"	40,000	
	면접문제 합숙출제	교수·공무원3급 이상		1일	300,000	
		공무원 4급 이상		"	200,000	
		공무원 5급 이하		"	150,000	
	PSAT	외부 전문가	기본급	문제당	70,000	
			채택급	"	50,000	
		재직자 (공무원)	기본급	"	50,000	
			채택급	"	40,000	
문제검토회의		교수	1일	200,000		
			반일	100,000		
		재직자	1일	70,000		
			반일	35,000		
문 제 심 사 선 정	주·객관식	합숙(1박이상)	1과목	1일	330,000	
			추가선정	1일	100,000	10문제 이상
		비합숙		1일	200,000	
				반일	150,000	
	감수위원	외부위원		1일	300,000	
		재직자		"	200,000	
	윤문위원	교수		1일	300,000	
		기타		"	165,000	
	면접문제 합숙심사선정		교수·공무원3급 이상	1일	330,000	
			공무원 4급 이상	"	230,000	
			공무원 5급 이하	"	180,000	
	사전심사			1일	200,000	
문제유형개발회의			1일	200,000		

구 분				단 위	지급기준(원)	비고	
정답 확정	대면회의			1회	200,000		
	서면심의			"	150,000		
문제 재검	교수			1일	200,000		
	교사			"	150,000		
	기타			"	70,000		
	추가검토			"	25,000	10문제 이상	
편집 기타	점자문제 편집			1일	180,000		
	간호요원(합숙)			"	110,000		
출제관리	합숙			"	105,000		
합숙 기타	생계보전	생활, 간호, 시설·인쇄, 편집		1일	70,000		
		채점		"	40,000		
	합숙가산	시험위원, 재검토 등		1일	20,000		
시험관리 위원회	회의참석			1일	100,000		
	안전검토			"	200,000		
채 점	주관식 (부수별)	집합 · 합숙	기본	10부 이내	150,000	* 출장채점시 5부 이내 100,000 10부 이내 200,000	
			1부추가(11~500부)	추가 1부당	3,500		
			1부추가(501~1,000부)	"	4,500		
			1부추가(1,001부~)	"	5,500		
	주관식 (문항별)	집합(비합숙)	기본	10부 이내	150,000		
			1부 추가	추가 1부당	2,000		
		합숙	부수당	1부당	2,000		
	집합채점	집합채점 관리	집합 채점위원		1일	200,000	
			휴일	1일	90,000		
				반일	60,000		
			평일	1일	60,000		
				반일	40,000		
	합숙채점		합숙 채점위원		1일	330,000	
			합숙 채점관리		"	105,000	
	채점관리			전일		1일	30,000
서류 심사 및 면접 수당	5급이상 채용시험 (공채, 경채 등)	재직자 (공무원)	평일	1일	250,000		
				반일	150,000		
		외부 전문가	휴일	1일	300,000		
				반일	200,000		
			평일	1일	300,000		
				반일	200,000		
	6급이하 채용시험 (공채, 경채 등)	재직자 (공무원)	평일	1일	200,000		
				반일	150,000		
		외부 전문가	휴일	1일	250,000		
				반일	200,000		
			평일	1일	300,000		
				반일	200,000		
			휴일	1일	350,000		
				반일	250,000		
	면접위원 회의수당	재직자(공무원)		1일	50,000	※교육·회의시간 2시간 초과시 적용	
		외부전문가		"	100,000		
		회화력 평가 수당				1일	300,000

구 분				단 위	지급기준(원)	비고	
시 험 종 사	시험장 책임관			1일	20,000		
	시험장준비 (사전출장)	휴일		1일	75,000		
		평일		＃	50,000		
	시험종사자	휴일		1일	105,000		
				반일	70,000		
		평일		1일	60,000		
				반일	40,000		
	시험종사자 시간연장 추가수당	면접시험	2시간 미만	1일	20,000		
			2시간 이상	＃	40,000		
		5급공채 1차시험 및 지역인재7급	정규시간	1일	20,000		
			1.5배 시간연장	＃	40,000		
			1.7배 시간연장	＃	50,000		
		5급공채 2차시험, 7급공채 1차시험, 민경채5·7급	정규시간	1일	10,000		
			1.5배 시간연장	＃	30,000		
			1.7배 시간연장	＃	30,000		
		기타 객관식 시험			＃	20,000	
	문제책 및 답안지 이송	휴일	전일	기본	1일	105,000	(부산·울산· 경남·전남·광주)
				원거리	＃	125,000	
			반일		반일	60,000	
		평일	전일	기본	1일	60,000	
				원거리	＃	90,000	
			반일		반일	40,000	

- ※ 면접시험이 정규근무 종료시간(18:00)을 2시간이상 초과하여 진행될 경우 사전결의에 의해 면접위원에 대한 수당 10만원 추가 지급 가능
- ※ 면접시험 시간연장 추가수당은 정규 근무시간(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 가능
- ※ 학제통합논술 채점에 대해서는 주관식(부수별) 지급기준 적용
- ※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전담인력, 전문 간호인력을 외부에서 지원받기 위해 필요시 시중 노임단가 지급
- ※ 감염병 확진 응시자 및 자가격리 응시자를 관리·감독하는 시험장 종사자에 대해 시험 종사 수당의 1배 범위에서 가산수당 지급 가능
- ※ 시험종사수당 이외에 각 기관별 예산사정 및 지급기준에 따라 '출장여비' 지급 가능
- ※ 수어통역사의 수당은 『한국농아인협회』 수당 지급기준 중 공공기관 부문을 참고하되, 1일 기준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 ※ 종일(점심시간 포함) 치르는 필기시험으로 시험장 정리 비용이 추가 필요한 경우 사전결의에 의해 1실당 5,000원의 시험장 인부임을 추가 지급 가능
- ※ 9급 국어·영어 객관식 문제출제 수당은 PSAT 문제출제 수당(기본급)에 준하여 지급 가능

일용인부임 등 집행기준

☐ 일용인부임

구 분			단 위	지급기준(원)	비 고
시험장 인부임	공 통 (1설 기준)		1명 ~ 60명	32,000	
			61명 ~ 100명	58,000	
			101명 이상	77,000	
시험 관련 인부임	공 통		인터넷원서접수, 답안지정리 및 채점지원 등	83,000	
국가 고시센터 인부임	합숙	편집	기본수당	1일	108,000
			가산수당	편집장	20,000
			숙련자	숙련자	10,000
			추가 편집수당	추가 편집수당	25,000
		생활	기본수당	1일	108,000
			가산수당	취사반장	40,000
			청소반장	청소반장	20,000
			숙련자	숙련자	10,000
		시설 인쇄	기본수당	1일	108,000
			가산수당	시설인쇄 팀장	20,000
			숙련자	숙련자	10,000
			간호	간호	간호
	비합숙	편집	-	1일	82,000
		생활	취사.청소	취사.청소	82,000
		간호	-	간호	82,000

☐ 시험장운영비 및 임차료

구 분		단 위		지급기준(원)	비 고
시험장 운영비	서류전형시험, PSAT, 면접시험	1개교 당	25실 미만	230,000	
			25실 이상	270,000	
	PSAT를 제외한 필기시험		25실 미만	130,000	
			25실 이상	150,000	
시험장 임차료	공 통	1명 ~ 60명 (냉.난방비 포함)	반일	15,000 (21,000)	반일/1일 구분 (1일 임차시 5,000원 증액)
			1일	20,000 (32,000)	
		61명 ~ 100명 (냉.난방비포함)		20,000 (29,000)	면접시험장 임차료 별도 (냉난방비는 반일기준이며, 전일은 2배 지급)
		101명 이상 (냉.난방비포함)		30,000 (42,000)	

□ 시험종사자 배정기준

구 분		단 위	배정기준	비 고
시 험 관리관	공 통	1실 ~ 10실	13명 이내	
		11실 ~ 20실	19명 이내	
		21실 이상	25명 이내	
		36실 이상	31명 이내	
시 험 감독관	공 통	1명 ~ <u>40명</u>	2명	
		<u>41명</u> ~ 70명	3명	
		71명 ~ 100명	4명	
		101명 이상	5명	

※ 시험 중 화장실 전면허용 시험장은 층별 전담 시험관리관 2~4명 추가 배정가능

- 층별 전담 시험관리관 배정기준은 동별로 각각 적용

(적용예시: 2개동 3개층씩 사용하는 경우 6개층으로 적용)

※ 감염병 확산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시험관리관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각 시험장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험관리관 추가 배정 가능